

법무부령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기 관 명 (부 서 명)	법무부 (형사기획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수사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사의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규정 (안 제3조, 제4조, 제6조)

- 1)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예단금지 등 규정
- 2) 인권침해 신고나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수사기밀 엄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규정
- 3)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피의자 등의 인격과 명예보호 등 유의사항 규정

나.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의견진술, 출석요구 절차, 임의동행 시 고지사항,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조사 시 휴식시간 부여, 전자정보 대한 압수·수색절차 등 인권보호 관련 규정 (안 제9조, 제10조, 제34조 내지 제38조, 제68조, 제69조 등)

다.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 영장의 신청, 현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시 즉시 입건하여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필요적 입건 사유 규정 (안 제18조)

라. 검사에 대한 수사개시 보고, 검사의 입건지휘 대상 중요범죄의 범위 규정 (안 제23조, 제33조)

마. 검사의 수사지휘 일반원칙,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6조 내지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0. 11. 17. ~ 12. 28.)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에 의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4조(불이익 금지 및 기밀엄수)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등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사권한 또는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도 전 항의 적용에 있

어 제3자로 본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사항에 한한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5조(관할)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7조(회피)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8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변호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
2.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1.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우

5.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 도주 원조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6.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⑩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

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보호)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2조(수사의 협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

리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건. 이미 검찰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또한 같다.
2.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그 처분이 내려진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4. 다른 기관이나 다른 관서로부터 1건으로 이송된 사건

제14조(지명서 휴대의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5조(합동단속반의 설치·운영 등)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특정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사범에 대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중복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사범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합동단속 또는 실태조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지식과 인권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과견, 일정기간의 소관 부서에서의 근무, 수사실무·법률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의 수강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6조(내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실존인물의 진정·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소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인·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범죄인지보고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죄명·범죄사실과 적용될 법조문을 기재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수사의 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의2(사건기록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압수·수색·검증(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다.),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대물적 강제처분을 집행한 때

2.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② 전 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을 받아 검시를 한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검시의 주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상태 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의 소지품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시를 하는 때에는 잠재지문과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검시와 참여자)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2조(자살자의 검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살한 사람을 검시하는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유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절 수사사무의 보고

제23조(수사개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공안을 해하는 죄
4. 방화 및 폭발물에 관한 죄
5. 살인의 죄
6. 상해치사·폭행치사죄
7.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8. 중요한 「관세법」 위반범죄
9. 중요한 「조세범처벌법」 위반범죄
10. 중요한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11. 중요한 「철도법」 위반범죄
12. 중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13. 중요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위반범죄
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
15.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범죄,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범죄
16.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안
17.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특별히 지휘한 사항

제24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당해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

제25조(범죄통계원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다만, 고소·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아니한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제4절 수사지휘

제26조(수사지휘의 원칙)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

제27조(수사지휘 일반) ① 검찰총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법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제1항의 일반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 수사지휘 또는 세부 지침 등의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28조(수사지휘 건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사법경찰관리 또는 다른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겨 기관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제29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수사지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대면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30조(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

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신속한 수사지휘)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수사지휘 기한 준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기한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33조(중요범죄의 입건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공안을 해하는 죄
4.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5.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범죄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전 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8조의2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입건하거나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절 임의수사

제34조(출석요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협의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특별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심야조사 제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휴식시간 부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은 법 제2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동석할 사람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경우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실제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제40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41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

제42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설립목적·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5.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6. 피의자의 병역관계
7. 피의자의 환경·교육·경력·가족상황·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8.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결과
9.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
10.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때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1.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2.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3.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처벌희망의 유무

14.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43조(조서와 진술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진술조서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서는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진술인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④ 진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인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⑤ 제10조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

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자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거나,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경우 진술인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5조(사건관계인의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녹음·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6조(조서 및 자료의 편철)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서, 수사보고 등 수사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제47조(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제243조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제48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49조(임상조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치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임상신문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50조(실황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가서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사항조회서에 의한다.

제6절 강제수사

제52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받은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같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이 제5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영장의 재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이

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허가서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1.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여 이미 발부받았으나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제54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 범죄의 경중·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기관 또는 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일시·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 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2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때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한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하거나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체포영장·긴급체포서·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58조(체포·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구속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모사전송 또는 이

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가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피의자의 접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접수 또는 진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91조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 등의 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유치장 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62조(구금과 건강상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피의자의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나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나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제64조(체포·구속장소감찰에 따른 조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인치 또는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

제65조(피의자의 도주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중이거나 구속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제67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68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

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69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⑥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참관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제70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의 일시·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압수목록에는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71조(증거물 등의 보전)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보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검증이나 감정을 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72조(검증조서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장소, 검증 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3조(압수물의 보관·폐기·환부 및 가환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처분을 하거나 같은 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보관, 폐기 등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에게 그 처분유형과 처분사유를 기재한 압수물 처분 지휘건의서를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일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서를 제출하여 원형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하거나 압수장물을 피해자환부 하는 때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제74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집행조서, 같은 법 제12조2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승인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75조(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

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 통신 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 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동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집행·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그 통지대상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영장 등의 반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영장반환서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반환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되어 압수수색영장을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절 고소·고발 사건

제79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에 대하여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제80조(고소의 대리)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81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

여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82조(고소 등의 취소)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절 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사건에 관한 특칙

제83조(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세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84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소년의 심정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85조(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①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 경력, 교육정도, 가정상황, 교우

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86조(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구속 또는 동행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보도상의 주의)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주거·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88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제89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제90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절 수사서류

제91조(수사서류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
3. 사투리·약어·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5. 지명·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
6.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조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도록 할 것

제92조(외국어로 된 서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절 범죄수익의 몰수·부대보전·추징보전 등

제93조(범죄수익 몰수·부대보전·추징보전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 제53조제1항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몰수·부대보전·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몰수·부대보전·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한 다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을 할 때에는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추정보 전취소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4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상륙 절차의 특례, 체류 부적당 통보, 반출·반입의 특례 등을 신청할 때에는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장 사건송치 등

제95조(사건송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96조(송치전 지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33조에 따라 입건 지휘를 받은 사건
2.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의 사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 송치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건

3.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지휘를 받아 지휘내용을 이행한 경우 및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지휘받은 경우

4. 그 밖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②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범죄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고발이 공소제기 요건이 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종결 등 송치에 준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해 사건의 증거 판단, 소추요건,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일반적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 건의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지휘검사의 성명 및 지휘일자를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지휘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97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

록에 사건송치서·압수물 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후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압수물(통화와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표지의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전 수사진행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의 영장신청서류 또는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8조(영상녹화물의 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송치 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

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9조(송치 및 의견서작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100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달리 결정한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추송)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2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때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4조(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이 고발한 사건은 해당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증언 준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할 경우에는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와 면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106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5호 내지 제36호의 장부와 서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수사를 직무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비치한다.

1. 범죄사건부
2. 압수부
3. 구속영장신청부
4. 체포영장신청부
5.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6. 긴급체포원부
7. 현행범인체포원부
8.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9.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10. 출석요구통지부
11. 체포·구속인명부

12. 체포·구속인 접견부
13. 체포·구속인 교통부
14. 체포·구속인 진료부
15. 물품차입부
16. 수사관계예규철
17.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18. 내사종결사건철
19. 변사사건종결철
20. 수사미제사건기록철
21. 통계철
22. 처분결과통지서철
23. 검시조서철
24. 잡서류철
25.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26.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27.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8.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29.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
30.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32.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4.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② 제1항제1호의 범죄사건부와 동항제11호의 체포·구속인명부는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시스템(「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여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된 것으로서 시스템의 각 기능 및 운영 상황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점검받은 시스템을 말한다)을 갖춘 경우에는 제106조제1항제1호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제10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사건부는 종이 장부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8조(수사관계예규철) 제106조제1항제16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검찰청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통첩·지령 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109조(수사종결사건철) 제106조제1항제17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110조(내사종결사건철) 제106조제1항제18호의 내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111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106조제1항제20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112조(통계철) 제106조제1항제21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113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106조제1항제22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114조(잡서류철) 제106조제1항제24호의 잡서류철에는 동조동항제16호 내지 제23호의 서류철에 편철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115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철한 후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16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1조제1항 각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117조(장부 등의 갱신)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18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106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수사관계예규철 : 영구
2. 범죄사건부, 압수부,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체포·구속인명부,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내사종결사건철, 변사사건종결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 : 25년
3. 통계철 : 5년
4.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긴급 통신제한조치 대장, 긴급 통신제한조치 통보서발송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3년
5. 구속영장신청부, 체포영장신청부,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긴급체

포원부, 현행범인체포원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출석요구통지부, 체포·구속인 접견부, 체포·구속인 교통부, 체포·구속인 진료부, 물품차입부, 처분결과통지서철, 검시조서철, 잡서류철 : 2년

제119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20조(문서의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변호인참여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 별지 제3호서식
4. 범죄인지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검시조서 : 별지 제5호서식
6. 수사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
7. 수사지휘건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8.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 : 별지 제8호 서식
9.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지 제9호 서식
10.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
11.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

- 12. 동석 신청서(피의자) : 별지 제12호서식
- 12의2. 동석 신청서(피해자) : 별지 제12호의2서식
- 13.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3호서식
- 14.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4호서식
- 14의2.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4의2호서식
- 15. 진술조서 : 별지 제15호서식
- 15의2. 진술조서 : 별지 제15의2호서식
- 16.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 16의2.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의2호 서식
- 17. 진술서 : 별지 제17호서식
- 18.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18호서식
- 18의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18의2호서식
- 19.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19호서식
- 20.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0호서식
- 21. 실황조사서 : 별지 제21호서식
- 22.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2호서식
- 23.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 24.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
- 25. 긴급체포서 : 별지 제25호서식
- 26.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26호서식
- 27.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27호서식

28.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28호서식
29.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29호서식
30.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0호서식
31. 구속영장신청서(사전) : 별지 제31호서식
32.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2호서식
33.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3호서식
34.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4호서식
35.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35호서식
36.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6호서식
37. 체포·구속통지서 : 별지 제37호서식
38.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38호서식
39.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39호서식
40. 체포·구속인명부 : 별지 제40호서식
41. 체포·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1호서식
42. 체포·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2호서식
43. 체포·구속인 진료부 : 별지 제43호서식
44. 임치증명서 : 별지 제44호서식
45.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45호서식
46. 물품차입부 : 별지 제46호서식
47.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47호서식
48.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48호서식

48의2. 현행범인 석방보고서 : 별지 제48호의2서식

49.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49호서식

49의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별지 제49호의
2 서식

50.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50호서식

5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 별지 제51호서식

52. 전자정보 삭제·폐기 반환확인서 : 별지 제52호서식

52의2.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52
호의2서식

52의3.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52
호의3서식

53. 압수조서 : 별지 제53호서식

54. 수색조서 : 별지 제54호서식

55. 물건제출요청서 : 별지 제55호서식

56. 압수목록 : 별지 제56호서식

57. 압수증명서 : 별지 제57호서식

58. 수색결증명서 : 별지 제58호서식

59. 압수부 : 별지 제59호서식

60. 검증조서 : 별지 제60호서식

61.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61호서식

62.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62호서식

- 63. 감정위촉서 : 별지 제63호서식
- 64. 감정위촉서 : 별지 제64호서식
- 65.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5호서식
- 66.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6호서식
- 67. 압수물건 보관서 : 별지 제67호서식
- 68. 유가증권 원형보존 요·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8호서식
- 69.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69호서식
- 70. 폐기조서 : 별지 제70호서식
- 71.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71호서식
- 72.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 별지 제72호서식
- 73.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 별지 제73호서식
- 74.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74호서식
- 75.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75호서식
- 76.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 별지 제76호서식
- 77.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별지 제77호서식
- 78.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78호서식
- 79.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별지 제79호서식
- 8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
- 81. 통신제한조치 보관 등 승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
- 82.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82호서식
- 83.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 별지 제83호서식

- 84. 통신제한조치 보관 등 승인 신청부 : 별지 84호 서식
- 8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 별지 제85호서식
- 86.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 별지 제86호서식
- 87.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신청부 : 별지 제87호서식
- 88.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88호서식
- 89.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88호서식
- 90.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 별지 제90호서식
- 9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91호서식
- 9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2호서식
- 9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서 : 별지 제93호서식
- 9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 : 별지 제94호서식
- 9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보고 : 별지 제95호서식
- 9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96호서식
- 96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96호의
2서식
- 9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 별지 제97호서식(갑),
(을)
- 9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98호서식
- 9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99호서식
- 10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100호서식
- 10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101호서식

- 10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 : 별지 제102호서식
- 103.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별지 제103호서식
- 10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104호서식
- 10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105호서식
- 10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별지 제106호서식
- 10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107호서식
- 10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서 : 별지 제108호서식
- 109.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09호서식
- 110.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10호서식
- 111.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111호서식
- 112. 소년 환경조사서 : 별지 제112호서식
- 113. 몰수·부대보전신청서 : 별지 제113호서식
- 114. 추정보전 신청서 : 별지 제114호서식
- 115.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 별지 제115호서식
- 116. 추정보전 신청부 : 별지 제116호서식
- 117.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 별지 제117호서식
- 118.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 별지 제118호서식
- 119.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19호서식

- 120.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 별지 제120호서식
- 121.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21호서식
- 122. 특례 등 신청부 : 별지 제122호서식
- 123. 사건송치서 : 별지 제123호서식
- 124. 의견서 : 별지 제124호서식
- 125.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25호서식
- 126. 기록목록 : 별지 제126호서식
- 127.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127호서식
- 128.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28호서식
- 12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29호서식
- 130.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130호서식
- 131. 촉탁서 : 별지 제131호서식
- 132. 회답서 : 별지 제132호서식
- 133. 추송서 : 별지 제133호서식
- 13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34호서식
- 135. 인상서 : 별지 제135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0000